

의안 번호	1551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 사 보 고 서</p>
----------	------	-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9. 5. 8.(수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5. 8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5. 20.(월)

2. 제안설명 요지 (경제산업국장 김영성)

가. 제안이유

-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 개선(2019. 7. 1. 시행)에 따라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
- 쓰레기봉투의 종류, 용도, 제작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특수규격봉투 신설 및 조문 수정(안 제13조)
- 특수규격봉투 제작사양 추가(안 제14조)
- 특수규격봉투 공급·판매가격 추가, 조문 수정(안 제16조)
- 과태료 부과·징수 등의 절차 준용안 변경(안 제25조)

다. 근거법규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유경달)

- 본 조례안은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라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등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규정한 조례로서
-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거체계를 개선하고자 특수규격봉투에 대한 봉투의 용량, 용도 및 색상과 재질, 제작사양, 쓰레기 봉투의 판매가격 등의 내용을 신설하였음.
-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폐기물관리법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